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21.

김상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8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0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2.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12.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상훈의원)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의 적체(積滯)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른 한편, 소액 분쟁조정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등을 참고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및 제69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 선 주)

1. 분쟁조정절차 간소화 제도(단독조정/간이조정절차) 도입

□ 개정안은 분쟁조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김상훈의원안은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조정부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이 단독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수의원안은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여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 현행법 제60조에 따르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회의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함.
-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

하도록 하고, 소비자분쟁 중 200만원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함.

-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분쟁조정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함.

□ 한편,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분쟁조정사건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위해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포함 총 7인 이상 11인 이하,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포함 총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5년간 한국소지바원의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4년 기준 9,731건으로 2020년 5,265건 대비 약 84.8%(4,466건) 증가하였으며, 평균처리 기간은 91.5일로 법정 처리 기한 30일 보다 61.5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 김상훈의원안은 「가사소송법」상의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중에 1인을 단독조정인으로 지명하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조정부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동수의원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상의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여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또는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등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단독조정제도와 간이조정절차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한 현행법 제63조와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을 규정한 현행법 제63조의2에 대한 예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조정위원과 관련하여 김상훈의원안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 단독조정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유동수의원안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150명의 조정위원 중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에 불과하다는 점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조정대상과 관련하여 김상훈의원안은 조정부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유동수의원안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현행법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조정위원회 구성을 달리하여 조정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과 유사입법례인 「의료분쟁조정법」도 조정부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조정요건과 관련하여 김상훈의원안은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유동수의원안은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또는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유동수의원안이 유사입법례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의료분쟁조정법」과 같이 조정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섯째, 부칙의 적용례와 관련하여 김상훈의원안은 단독조정제도의 시행 이후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58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절차에서 정한 기한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칙의 적용례에 현행법 제58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은 단독조정제도 또는 간이조정절차 신설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 및 사건 적체 해소 등이 기대되므로 수용하는 입장이나 일부조항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함.

- 한국소비자원은 김상훈의원안의 단독조정제도는 법정화되어 있는 회의의 구성원을 변동시키는 것이므로 기존 조항의 배제를 개정안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의 적용례에 제58조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유동수의원안의 간이조정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임 또는 비상임위원 모두가 간이조정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서 분쟁조정회의 금액 기준을 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간이조정의 금액기준을 명시하거나, 조정부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피해구제절차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절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한 소송대리의 방법 또는 소장 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

- 신청대상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피해자, 소송목적의 값에 상관없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 피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건(사회적 배려계층 및 소액사건)은 481건의 신청을 받아 139건의

소송대리 및 303건의 소장작성을 통해 총 442건을 지원하였고, 집단 사건(다수 피해자)은 2022년도에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환급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결정 불성립에 관련한 소송지원을 하였으며, 2025년 3월에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여행·항공·숙박 상품의 결제대금 환급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불성립과 관련한 소송지원을 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개정안은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소송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나, 소송지원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소송지원 업무의 세부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수정 수용하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